대한민국정부

선람	기 관 의 장

관보

http://gwanbo.korea.go.kr

제15884호 2004. 12. 30. (목)

(2004.12.30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법 률】

○법률제7250호(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3
○법률제7251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5
○법률제7252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0
○법률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10
○법률제7254호(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11
○법률제7255호(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2
○법률제7256호(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4
○법률제7257호(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17
○법률제7258호(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 ……19
○법률제7259호(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
○법률제7260호(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23
○법률제7261호(재해구호법중개정법률) ……25
○법률제726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6
○법률제7263호(지식정보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 ……31
○법률제7264호(전파법중개정법률) ……32
○법률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35
○법률제7266호(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 ……38
○법률제7267호(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 ……39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18610호(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40
○대통령령제18611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41
○대통령령제18612호(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42
○대통령령제18613호(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52
○대통령령제18614호(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53

(이면 계속)

회람								

발행 **행정자치부** (편집 ☎3703-4348 보급 ☎727-0611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 110-760)

1201-4A 1995. 10. 12. 승인
190×268 신문용지 48.8g/㎡

○대통령령제18615호(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54
○대통령령제18616호(공정거래위원회직제중개정령)……57
○대통령령제18617호(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58
○대통령령제18618호(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61
○대통령령제18619호(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69
○대통령령제18620호(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71
○대통령령제18621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72
○대통령령제18622호(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81
○대통령령제18623호(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83
○대통령령제18624호(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89
○대통령령제18625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90

【부 령】

○재정경제부령제400호(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91
○농림부령제1484호(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91
○산업자원부령제249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92
○정보통신부령제162호(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93
○보건복지부령제301호(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94

국회에서 의결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4년12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허 성 관
장 관

⊙法律 第7259號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 행정형기관 :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2. 기업형기관 :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③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特別會計의 設置)"를 "(특별회계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중 "責任運營機關"을 "기업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기업형기관"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企業豫算會計法의 적용)"을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責任運營機關"을 "기업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중 "企劃豫算處는"을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企業的 특수성"을 "특수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豫算의 移用·轉用)"을 "(예산의 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豫算會計法 第36條 및 第37條"를 "기관장은 예산회계법 제37조"로, "特別會計의 計定別 歲出豫算"을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移用하거나 轉用"을 "전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기관장"으로, "移用 또는 轉用"을 "전용"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중 "決算"를 각각 "특별회계 결산"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유

종전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업무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나누어 행정형기관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및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법 제2조 및 제27조)

(1)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를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로 함으로써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기업예산회

계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려는 것임.

(2) 책임운영기관을 주된 사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고,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되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보장함.

(3)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의 운용을 달리 할 수 있게 되므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기관장의 채용기간 확대 및 최소 채용기간 보장(법 제7조제3항)

(1)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짧아 기관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늘리려는 것임.

(2)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통합 관리(법 제16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상 자율성 확대(현행 제35조제2항 삭제, 법 제36조)

(1) 책임운영기관에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수입중 일정비율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예산전용권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운용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행사하도록 함.

(3) 책임운영기관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4년12월30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허 성 관
장 관

⊙法律 第7260號

地方公企業法中改正法律

地方公企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중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중 "行政自治部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